6·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 (김기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456

발의연월일: 2025. 1. 13.

발 의 자:김기현·정성국·김상욱

김대식 · 김예지 · 한지아

김태호 · 김용태 · 성일종

조배숙 · 김장겸 · 이만희
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6·25전쟁이 발발한지 74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한국으로 돌아온 국군포로는 약 8천 명에 불과하고, 6만 명의 국군포로가 돌아오지 못했다고 추정되는 상황임.

현재 국군포로에 관하여는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하고 있으나, 이는 송환된 군인들의 지원에 초점이 맞 춰져 있어 이들의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대통령 소속으로 6·25전쟁국군포로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들의 피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, 명예회복을 하도록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대통령 소속으로 6·25전쟁국군포로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를 두고, 6·25전쟁 중 국군포로 및 국군포로가족의 피해에 대한 진 상조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·의결하도록 함(안 제4조).
- 나.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국군포로 관련 자료의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도록 함. 다만, 기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,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.
- 다. 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6·25전쟁 국군포로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(안 제9조).

법률 제 호

6·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6·25전쟁 중 발생한 국군포로의 피해를 규명하고,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1. "6·25전쟁 국군포로"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6·25전쟁(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를 말한다) 중 적국(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)에 의하여 억류 중인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.
 - 2. "6·25전쟁 국군포로가족"이란 6·25전쟁 국군포로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.
- 제3조(국가의 책무) 국가는 6·25전쟁 국군포로(이하 "국군포로"라 한다)의 생사 확인 및 명예회복을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제4조(6·25전쟁국군포로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) ① 국군포로의 진 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국군포로 및 6·25전쟁 국군포로가족 (이하 "국군포로가족"이라 한다)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

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6·25전쟁국군포로진 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- 1. 국군포로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
- 2. 국군포로 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
- 3. 국군포로 및 국군포로가족의 심사·결정에 관한 사항
- 4. 국군포로 및 국군포로가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
- 5. 진상조사보고서 및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
- 6.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 및 송환에 관한 사항
- 7. 그 밖에 국군포로 및 국군포로가족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, 위원은 국방부장관·통일부장관·외교부 장관·국가보훈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국군포로가족 대 표 및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④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제5조(사무국의 설치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.
 - ② 사무국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6조(비밀누설의 금지) 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7조(불이익 처우금지) ① 누구든지 국군포로에 관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.
 -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증언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.
- 제8조(국군포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) ①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국군포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 야 한다.
 -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,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그 기간의 연장은 2회를 넘을 수 없다.
 -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- ④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국군포로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 - ⑤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를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.

- 제9조(진상조사보고서 작성) ① 위원회는 제8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6·25전쟁 국군포로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(기념사업) 정부는 국군포로 및 국군포로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- 제11조(국군포로 등의 신고처 설치 및 공고)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국군포로와 국군포로가족의 피해신고를 접수받기위한 신고처를 설치하고 공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외국에 체재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위하여 재외공관에도 신고처를 둔다.
- 제12조(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) 국군포로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.
- 제13조(업무의 위임·위탁)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특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있다.
 - ② 제1항의 업무의 위임·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14조(공무원의 파견 등)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 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5조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 닌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「형법」 제129조부 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.
- 제16조(벌칙) 제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) 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 명, 위원회의 설립준비행위 등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.